

1. 개정이유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요구권 신설 등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자료요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구권의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의 구체화(안 제7조, 제9조 신설)”

- 1)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를 규정(안 제7조)
- 2) 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배출가스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항만출입차량 정보 등)를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20. ~ 2. 2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3. 하역장비의 원동기 제작연도
4. 장비 원동기 제작시 적용된 배출가스 인증기준
5. 그 밖에 하역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인 자동차 현황
2. 항만 출입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 및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차량 소유자 정보(차량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주소가 포함된 정보)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항만 출입 기록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 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u> <u>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u> <u>3. 하역장비의 원동기 제작연도</u> <u>4. 장비 원동기 제작시 적용된 배출가스 인증기준</u> <u>5. 그 밖에 하역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u>
<u>제7조 (생 략)</u> <u><신 설></u>	<u>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u> <u>제9조(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u>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또
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
급인 자동차 현황

2. 항만 출입 자동차의 차량 등
록번호 및 성명, 생년월일, 연
락처, 주소가 포함된 차량 소
유자 정보(차량 소유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
록번호, 사무소 연락처, 사무
소 주소가 포함된 정보)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항만 출입 기록 등

<삭 제>

<u>등) 법 제16조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 를 말한다.</u> <u>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u> <u>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u> <u>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u> <u>제9조 (생 략)</u>	<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	---------------------------------